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10. 31 선고 2023가단38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4.부터 2024.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265,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소유 D에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에게 선급금 및 임금 등 합계 87,300,000원(1차 승선 관련 75,500,000원, 2차 승선 관련 2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금원 중 51,265,820원(1차 승선 관련 35,000,000원, 2차 승선 관련 16,265,820원)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1차 승선 관련

1) 임금 등 지급금

원고가 1차 승선 관련 2021. 2. 11.부터 2022. 3. 21.까지 피고에게 75,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지급하여야 할 임금

가) 피고는 D에 2021. 7. 1.부터 2022. 3. 31.까지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어구 및 선박수리 점검을 위하여 실제 승선일 이전인 2021. 6. 1.부터 2022. 4. 30.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21. 7. 1. 위와 같은 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2022. 3. 31. 이후 승선기록이 없으며 오히려 2022. 4. 16. 다른 선박(E)에 승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을 제1호증의 기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5%의 깃배분율에 따른 비율급으로 피고의 임금을 정하였고 위 승선기간 동안 공동경비를 제외한 어획금액이 718,094,167원이므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비율급)이 35,904,700원이라고 주장한다(다만 피고와 위 기간 35,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취업규칙 제5조 제2항에서 기관장의 잇배분율을 6%로 정하고 있고(갑 제8호증의 기재), 선원법 제122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5%의 잇배분율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D 취업규칙에 따른 잇배분율 6%로 계산한 비율급은 43,085,650원(= 718,094,167원 × 6%, 원 미만 버림)이고, 이는 월 4,787,294원(= 43,085,650원 ÷ 9개월)에 해당한다. 그런데 D 취업규칙 제4조 제1항, 제3항은 선장, 기관장의 임금은 비율급으로 하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월 고정금액(기관장 6,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비율급의 월액이 월고정급에 미달하는 경우 월고정급을 비율급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갑 제8호증의 기재). 위 승선기간 월 비율급 4,787,294원이 월고정급 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월 6,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가 위 승선기간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54,000,000원(= 월 6,000,000원 × 9개월)이다.

3) 반환하여야 할 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위 승선기간 관련 21,500,000원(= 75,500,000원 - 54,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원고와 피고가 위 기간 35,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차 승선 관련

1) 임금 등 지급금

원고가 2차 승선 관련 2022. 6. 2.부터 2022. 8. 23.까지 피고 측에 21,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지급하여야 할 임금

가) 피고는 D에 2022. 7. 13.부터 2022. 8. 27.까지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그물 작업을 위하여 실제 승선일 이전인 2022. 6. 13.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D 취업규칙에 따른 잇배분율 6%로 계산한 비율급은 5,534,172원(= 92,236,208원 × 6%, 원

미만 버림)이고, 이는 월고정급 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월 6,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가 위 승선기간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9,200,000원(= 월 6,000,000원 × 46/30일)이다.

3) 반환하여야 할 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위 승선기간 관련 12,600,000원(= 21,800,000원 - 9,2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 21,500,000원 + 1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11.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구